
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나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(' 24. 7. 2.)에 따른 후속조치로, 경조사 휴가 및 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일을 변경하고 장기 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개정(안 제9조 및 별표3)
 - 재직기간 : (당초) 2년 미만 → (변경) 5년 미만
 - 연가가산 : (당초) 2일 가산 → (변경) 3일 가산
-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개정(안 별표4, 제11조제1항 관련)
 - 경조사 일수 : (당초) 1일 → (변경) 3일
-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 개정(안 별표5, 제11조제3항 관련)
 - 승인권자 : (당초) 복무업무 총괄 부서장 → (변경) 소속 부서장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기준, 가산일 개정과 공무원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장기재직휴가 승인권자를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휴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속직원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, 연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2023년 6월에 개정됐음에도 이번에 같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음. 집행기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